

[설문응답 후 구입한 화장품 환불 -사업자발송용]

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통보서

◎ 수신인 : □□ 뷰티
대표 ○ ○ ○
서울시 송파구 000로 000-0
02-000-0000

◎ 발신인 : 소시모
서울시 종로구 000로 00, 000호
010-0000-0000

구 입 일 : 20 . . .
구입품목 : 화장품
전체금액 : 1,200,000원
지불금액(계약금 등) :

청약철회 사유

1.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 . . . 퇴근하던 중 귀사의 영업사원이 설문에 응해 주면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권유하여 본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.
3. 설문을 마친 후 위 영업사원이 스쿠알렌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복용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 100% 환불 처리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,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나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고 너무 고가이므로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. . . 자로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.
4. 동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약철회등에 대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(우체국에 가는 날짜를 씁니다.) 20 년 월 일

(위의 발신인과 같은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.) 상기 계약자: (인)

※ 작성이 끝나면 동일한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총 3매를 작성합니다.